문서번호	감사실-1076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7.02.16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이사장 방침 제 32호

★대리	팀장	감사실장	상임감사	이사장
협 조				
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시행 관련 -

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(안)

2017.

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| 감사실

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(안)

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시행 및 「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」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사항을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·시행코자 함. ※ 기획조정실 심의 및 사규개정예고(`17.2.6~2.10) 완료

Ⅰ 추진방향 및 경과

○ 「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 준용

- 관련근거 : 권익위 행동강령과-1734(2016.9.26.)호

『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(권익위 예규 제103호)』

○ 「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」 준용

- 관련근거 : 市 조사담당관-1388호(2017.1.19)호

『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알림』

Ⅱ 개정(안) 주요내용

1 부정청탁·알선 등의 예외 행위 정비 (제14조 제③항 개정)

○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임직원에게 제안 건의하는 행위주체 명확화 (5호)

- 【현행】 개인, 단체 등 ➡ 【개정】 선출직 공직자, 정당, 시민단체 등

○ 그 밖에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(6호 신설) ※「청탁금지법」 제5조 제②항 준용

2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(제14조의2 제①항 개정)

○ 임직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(감사실장)에게 신고 ※「청탁금지법」 제7조 준용

3 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 사항 정비 (제17조 제①항 각호 개정)

○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 및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및 5만원 이내의 경조사비·선물 등 (2호)

현행	개정
·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1인당 3만원 · 통상적인 사교·의례의 목적 제공 음식물 5만원 허용	·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 목적 제공 음식물 3만원 이내 허용

※ 경조사비의 경우, 청탁금지법 상 10만원 이내 보다 강화하여 시행 (5만원 이내 허용) ➡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준용

○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, 음식물 등의 금품 (10호 신설)

4 배우자 등의 금품등의 수수제한 구체화 (제18조 개정)

○ 적용대상 및 제한되는 행위 명확화 ※「청탁금지법」제8조 준용

현행	개정
·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 ·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는 행위 금지	· 배우자 또는 본인·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 ·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 금지

5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구체화 (제19조 개정)

○ 적용대상 및 제한되는 행위 명확화 ※「청탁금지법」제8조 준용

현행	개정
· 임직원이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	· 임직원이 임직원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임직원의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

6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(제21조 개정)

○ 신고 대상의 확대 (대가여부 불문, 기고 등 포함) ※「청탁금지법」 제10조 준용

현행	개정
· 대가를 받고 세미나, 공청회, 토론회, 발표회, 심포지엄, 교육과정, 회의 등에서 강의, 강연,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 등을 할 때 미리 이사장에게 신고 다만,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(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인 경우에는 제외	·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사전 신고 (대가 수령여부 불문)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학교,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에 출강하는 경우와 법령(조례, 규칙 포함)에서 정한 위원회를 제외한 그 밖의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

※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, 청탁금지법 (신고 제외) 보다 강화하여 시행 ➡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준용

○ 사전 신고 보완 및 사후 신고 기한 명시 :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 2일 이내

○ 사례금 상한액 조정 (별표 1 개정)

현행

(단위: 천원/ 1시간)

구분	이사장·임원	3급 이상	4급 이하	비고
최초1시간 상한액	400(이사장) 300(임원)	230	120	원고료 포함
1시간 초과	300·200	120	100	

개정

구분	이사장	임원	그 외 직원
상한액 (1시간)	40만원	30만원	20만원
총액 상한액	60만원	45만원	30만원

7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신설 (제21조의 2)

○ 신고기한 명시 :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2일 이내

○ 반환절차 ※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 제27조 준용

①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 → ② 신고사항 확인 후 7일 이내 반환 초과사례금 액수 산정 통보 → ③ 반환 조치

8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(제28조 개정)

○ 신고 의무 부여 ※「청탁금지법」제9조 준용

현행	개정
·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즉시 반환 조치	· 지체 없이 신고 의무 발생 - 임직원 자신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- 배우자나 임직원의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·비속이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

9 기타사항

○ 제2조 (정의) 5호 "금품등"의 해당 목 정비

- 【개정】 가.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이익 ※ 현행 금전적 이익

  라. 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·무형의 이익

○ 제5조 (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지시등에 대한 처리) 제②항 및 제9조 (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) 제①항

- 【개정】 별표 서식 변경 및 전자우편 등의 처리 방법 추가

○ 제6조 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 제①항

- 【개정】 4호. 공단의 퇴직임직원으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던 자 ※ 직무관련성 삭제

  7호. 배우자, 본인·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과 형제자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관련자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인 경우

  ※ 배우자 포함

○ 제22조 (금전의 차용 금지 등) 및 제25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)

- 【개정】 별표 서식 변경

○ 제29조 (교육) 제②항 : 교육 횟수 조정 (매년 1회 이상)

○ 제30조 (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) 제②항 : 청탁방지담당관 겸임 수행

○ 제31조 (윤리운영위원회의 설치)

- 【개정】 이사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 및 이행과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위반 신고 처리 조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윤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Ⅲ 향후 추진일정

○ 방침수립 : ~`17.2.16

○ 공포의뢰(→기획조정실) : ~`17.2.17

○ 공포·시행 : ~`17.2.20

따로붙임 :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끝.